

「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8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적용대상 기관 등(안 제1조~제5조)
- 구매촉진, 지역상품 우선구매, 업체 정보 제공(안 제6조~제8조)
- 포상,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(안 제9조~제11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,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상품의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안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, 관련 부서간의 업무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향후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협의회 활동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관계 부서에서는 우수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 정보와 생산 상품 등의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